

용어사전

방재와 보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사용되는 용어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생소한 분야로 느껴지는 예가 많다. 그래서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재와 보험에 관한 전문용어를 해설, 소개한다.

방재용어

• 폰(phon)

사람이 느끼는 감각적인 소리의 크기에 대한 단위로 0폰은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의 음, 즉 최소가청음이다. 약 130폰이 소리로서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음이다.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는 보통 소음계를 사용하고 소음의 크기를 귀로 느끼는 것과 한가지로 폰의 단위로 표시한다. 소방법에서 경보설비의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 절연내력(dielectric strength)

전기의 절연물이 어느 정도의 전압까지 그 절연성을 유지하는가를 표시하는 값을 절연내력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절연물에 전압을 가하고 차차 전압을 상승시켰을 경우, 전압이 높아지면 돌연 절연성이 상실되면서 불꽃방전이 일어난다. 이 현상을 절연파괴라 하며 파괴가 일어나는 전압을 절연파괴 전압이라 한다.

• 자연발열(spontaneous heating)

어떤 물질이 외부로부터 열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지르코늄의 산화와 같이 상온에서의 산화반응이 주위로 발산될 수 있는 열보다 많은 양의 열을 발생할 경우 자연 발화가 일어난다. 즉 어떤 산화반응이 위험성 있는 가열을 초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열발생 속도, 공기의 공급상태, 주위의 열차단 등 제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 분해열(heat of decomposition)

화합물이 분해할 때 발생하는 열을 분해열이라 한다. 어떤 특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되어 물질이 분해되면 열을 방출하면서 계속 분해된다. 니트로셀룰로즈는 분해시 열을 위험할 정도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 저항열(resistance heating)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물질의 원자구조특성에 따르는 전기저항 때문에 전기에너지의 일부가 열로 변환한다. 이때 발생하는 열량은 저항에 비례하고 전류의 2제곱에 비례한다.

• 아아크열(heat from arcing)

전류가 흐르는 회로가 나이프

스위치에 의하여 혹은 우발적인 접촉 또는 접점이 느슨하여 전류가 끊길 때 아아크가 발생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되는데 이때의 온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주위의 가연성 혹은 인화성 물질을 점화시킬 수 있다.

• 변류기(current transformer)

큰 전류에서 일정한 비율의 작은 전류로 변환시켜 계기나 계전기 등에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종의 변압기.

일반적으로 CT라 부르며 2차 전류는 5(A)로 정하여져 있다. 변류기의 2차측에 접속한 계기나 기구류를 떼어 낼 때는 반드시 먼저 단락을 하고난 다음에 계기를 분리한다. 만일 1차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2차측을 개방하면 소손이나 절연파괴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 코오드(cord)

0.18~0.32mm 정도의 가는 연동선의 집합연선에 고무, 비닐 등의 절연을 한 것으로서 유연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동기구, 전기기구 등에 사용하고 있다. 다만 비닐코오드선의 경우 전기를 열로 변환, 사용하는 전열기구, 백열등에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보험용어

• 계약후 알릴의무 (통지의무)

보험계약 체결후 일정사실의 발생을 보험자에 대하여 통지할 보험계약자측의 의무로서 위험 변경증가와 보험사고발생 등에 대하여는 계약후 알릴의무로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는 ①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②양도할 때 ③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또는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④다른 곳으로 옮길 때 ⑤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적용요율

보험의 목적인 물건에 따라, 지역에 따라, 자체위험과 주위의 위험성에 따라 정해진 기본요율에 할증요율, 할인요율을 가감한 최종요율을 말하며, 이는 보험가입금액 1천원 단위로 하여 계산된다.

이 적용요율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 화기금지 추가약관

창고물건요율을 적용하는 창고, 보관용 옥외탱크, 사일로와 이들에 수용되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첨부한다. 또 공장물건의 부속창고요율을 적용하는 물건에도 첨부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 아래의 물건안에서는 흡연, 점등 및 그밖에 일체의 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나 안전하게 시설된 점등 및 안전등은 사용할 수 있다.

• 전기위험 부담보 추가약관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기기 또는 장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첨부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기타 전기기기·장치에 대한 전기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코일의 변질, 금속부분의 용해, 절연물질의 탄화 등의 손해가 생긴다. 이것들은 화재에 의한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전기적 사고로 생긴 기기의 손해는 화재손해를 포함하여 일체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연소에 의한 다른 기기의 손해는 보상하게 된다. 각종 물건으로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모두 이 조항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

• 소화설비할인 특별약관

이 조항은 소화설비규정에 적

합한 설비가 되어 있을 경우 소화설비할인이 적용된 계약에 부과하는 약관으로서 기 할인 적용된 소화설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 늘 유효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소화설비규정의 할인대상 소화설비는 ①옥내소화전설비 ②옥외소화전설비 ③가반식 소방동력펌프(소방자동차 포함) ④자동화재경보설비 ⑤자동화재속보설비 ⑥스프링클러설비 ⑦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⑧포소화설비 ⑨하론1301소화설비 등이 있다.

• 구내폭발담보 특별약관

보통약관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는 폭발 또는 파열의 손해를 담보하는 특별약관으로 구내에서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폭발 또는 파열이란 기체(氣體) 또는 증기의 급격한 팽창을 수반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하며 자폭손해, 피폭손해가 모두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관기 등의 물리적 폭발이나 파열은 기계보험 등의 담보위험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있으며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의 분해비산으로 생긴 손해를 면책위험으로 한 것도 기계적 피해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또한 구내라 함은 율타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곳과 이에 연속된 토지로서 같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점유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㉞